

#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32
----------	-----

2016. 2. 4.(목)  
행정문화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김영주 의원 등 7명

나. 제출일자 : 2016년 1월 15일

다. 회부일자 : 2016년 1월 18일

라. 상정일자 : 2016년 1월 26일

- 제34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영주 의원)

가. 제안사유

○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 제77조가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세부 지원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장애인공무원,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의 정의 등 (안 제2조)

○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범위 등(안 제5조)

○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안 제9조)

○ 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안 제10조)

### 3. 검토보고 요지

- 금번 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가 개정됨에 따라(개정 2015. 5.18) 충청북도에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세부 지원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공무원과 비장애인공무원이 평등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을 검토해 보면,
  - 안 제3조에서 도지사는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조항을 두었음. 상위법에서 규정한 근로지원인 배치,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편의시설 설치 등을 상징적으로 언급하였지만 앞으로 장애인공무원이 인사, 근무환경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책개발과 전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제6조(지원범위 적용 배제 등)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표준 조례안에서는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을 지원범위에서 적용 배제하였으나 본 제정안에서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도 지원범위에 포함하여 표준조례안 보다 더 지원범위를 강화한 것은 합리적이라 판단됨.
  
- 금번 제정조례안을 통하여 충청북도에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이 보다 편리한 근무환경으로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 332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발 의 자	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6년 1월 15일

# 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2
----------	-----

발의연월일 : 2016년 1월 15일

발 의 자 : 김영주, 임희무, 엄재창  
연철흙, 윤은희, 최광옥  
이광진

## 1. 제정이유

-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 제77조가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세부 지원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장애인공무원,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의 정의 등 (안 제2조)
- 나.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범위 등(안 제5조)
- 다.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안 제9조)
- 라. 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안 제10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7조
- 나. 관련부서 협의 : 행정국 총무과와 협의함.
-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충청북도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도지사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 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배치,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지원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도지사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①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이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이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범위 적용 배제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7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지원방법)** ① 도지사는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근로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발취

### □ 지방공무원법

- 제77조(능력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비용 추계서

## 1. 사업개요

-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함

## 2. 비용 발생 요인

- 근로지원인 배정시 인건비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구입비용 발생

## 3. 관련조문: 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 (안 제5조)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안 제5조 1항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

나. 추계 결과 : ' 16년부터 향후 5년간 총 60백만원 정도 소요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세 출	60,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출연금 지급	60,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 장애인 1백만원, 중증장애인 2백만원 기준으로 5년간 현재 도청 내 장애인 공무원에게 지원기준으로 추계되었으며, 근로지원인에 대한 예산편성은 향후 수요발생시 편성

## 6. 작성자 :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영주 의원